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컨설턴트 모집 공고 (계약기간 2021년 계약일~2022년 3월15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컨설턴트(계약기간 2021년 5월1일~2022년 3월15일)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

1. 인력 운영 안내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컨설턴트에 선발된 자는 향후 계약 관련 등록을 거친 후 기간제 컨설턴트로 고용됩니다.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무분야 (근무예정 기관)	채용직급	채용 인원	주요 담당 업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컨설턴트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 연수 ○ 학교협동조합 자료 제작 및 홍보 ○ 학교협동조합 각종 행사(포럼 워크숍, 운영보고회) 업무지원 ○ 학교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실무 컨설팅 (창립총회, 인가신청, 등기·등록 등)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업무(실태조사, 총회 회의록 공증면제 등)지원 ○ 학교협동조합 조합원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등 ※담당 업무 변동에 따라 추후 업무 변동 가능

- 근무예정 기관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참여동 3층)
- 계약기간 : 2021년 5월1일 ~ 2022년 3월 15일

3.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공고일 기준)

- 1)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20세이상
- 2) 자격요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관련 1년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필수)
- 3)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우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학교협동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련 분야 우대요건

○ 직무분야 실무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5) 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관련근거

-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7380호, 2020.1.2.개정)

- 2)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 위탁·수탁계약(2020. 3. 13.)

5. 근무조건 등

- 1)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2) 근무시간 : 주 40시간, 전일제근무
- 3) 보 수 : 월액(주 40시간 기준) 월 2,411,190원
※ 실지급액은 4대보험 개인부담금 원천공제 후 지급
- 4) 복 무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편람」을 따름
- 5) 근 무 처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은평구 불광동 소재, 서울혁신파크 참여동 3층)
- 6) 기 타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법정휴일 유급 휴무 등

6. 시험 방법

1) 서류심사(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2)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학교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 내용, 채용 후 포부(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대상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계약결격사유, 계약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1) 공고기간	2021. 4. 1.(목) ~ 4. 8.(목) 18시
2) 원서 접수기간	2021. 4. 9.(금) ~ 4. 19.(월) 18시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4. 20.(화)(예정)
4) 면접시험	2021. 4. 21.(수)(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예정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4. 26.(월)(예정)
6) 근무예정시기	2021. 5. 1.(토)(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면접 합격자 명단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대상	세부내용
응시원서	1부(서식양식)	응시자 전원	
자기소개서	1부(서식양식)	응시자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양식)	응시자 전원	
자격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 (서식양식)	응시자 전원	1) [서식 4] 경력증명서 양식 혹은 발행기관 발급 양식으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 2) 경력인정 범위: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기관에서 응시직종과 동일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주15시간 이상)한 경력만 인정 3) 경력인정 기간, 주당 근무시간 명시, 주된 업무 명기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대상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합격자 전원 제출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 전원 제출
급여 통장 사본	1부	최종합격자 전원 제출
기타 서류	1부	해당자(별도 안내) 제출

3) 응시원서 접수		
접수	우편접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참여동 3층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2021. 4. 19(월) 18시 도착분까지)
	이메일접수	schoolcoop2020@gmail.com(2021. 4. 19(월) 18시 도착분까지) 1차 서류 합격 후 원본 제출(필수)
문의 사항	schoolcoop2020@gmail.com, 070-4771-0129	

9.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최종합격이 되었다더라도 경력검증,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근로계약 이후에도 근무태도 불량 등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교육청)
 이 메 일: schoolcoop2020@gmail.com
 전화번호: 070-4771-0129

[서식 1]

응시원서

본인은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컨설턴트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며, 만일 관련사항 해당 시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4월 일 성명 인

성명	한글		① 응시직종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컨설턴트
	한자			
생년월일			② 응시번호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③ 주민등록상주소 (주민등록등본)		(우:)		
자택전화			휴대폰	

① 응시직종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컨설턴트	응시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컨설턴트채용	
② 응시번호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021년 4월 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력 및 자격 사항

① 응시직종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컨설턴트	② 응시번호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	--------------------	--------	-----------------

④ 경력사항 작성란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직종명	1주당 근무시간	업무내용	경력증명서 첨부 여부 (○,×로 기재)
총 경력 (*인정 경력만 합산하여 작성)			년 월		

⑤ 자격 및 면허 작성란(해당자)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증 사본 첨부 여부 (○,×로 기재)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되, 서식 변경 금지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 ① 응시직종: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명 기재
 - ② 응시번호: 응시자 미기재
 - ③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④ 경 력: 근무경력 기재. 서식4 경력증명서 양식 혹은 발행기관 별도 발급 양식으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
 - ※ 경력인정 범위: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기관에서 응시직종과 동일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주15시간 이상)한 경력만 인정
 - ※ 경력인정 기간, 주당 근무시간 명시, 주된 업무 명기
 - ※ 인정경력 외 기타 경력사항을 기재할 경우 경력증명서 첨부
 - ⑤ 자 격: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해당자만) 기타 자격증을 기재할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시 ○로 기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자기소개서

응시직종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컨설턴트	응시번호	(응시자 미기재)
<p>1.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p> <p>2.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p> <p>3. 학교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 내용</p> <p>4. 채용 후 포부(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요령 -</p> <p>※ <u>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학교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u></p> <p>☞ 자기소개서는 서류심사 시 응시자가 관련 업무에 적합한 대상인지, 자신을 잘 알릴 수 있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료이므로 신중하게 작성바람</p> <p>※ 작성시 응시자 성명, 출신지역(학교), 가족관계 등은 기재 불가</p> <p>※ <u>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응시번호 미기재</u> - 컴퓨터로 작성 시 기준 : 글자모양 휴먼명조체, 13P, 줄간격 160%, 글자색 검정</p> <p>※ <u>자기소개서에 기술할 자격취득 관련 사항은 응시원서와 동일해야 함</u></p>			

[서식4]

경력 증명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근무사항	④근무기간		⑤구분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주당근로시간 표시 요망	⑥근무부서
	부터	까지		⑦직종명/ 담당업무
⑧총근무기간	년	월	⑨퇴직당시의근로자 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⑩퇴직사유				
⑪용도				

※ 주15시간 이상이면서 동일기관에서 같은 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만 인정
 ※ 발급기관 별도 양식 제출 가능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기관(학교)장